

朴相洙	金東暉	蔡在善
金世昌	金忠煥	金平田
李震杓	金孝喆	李仁求
庚東均	金裕顯	尹明奎
韓守均	權五範	

○出席公務員

區廳長	盧承煥
副區廳長	金賢鍾
保健所長	金永浩
總務局長	梁石龍
財務局長	文忠實
市民局長	尹丙汝
都市整備局長	李春基
建設局長	申東文
總務課長	文輝昇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9. 14.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1996년 9월 5일 麻
浦區廳長 제출

나. 회부일자:1996년 9월 6일

다. 상정일자:제4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96. 9.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감사실장 김진택

가. 개정이유

임명적으로 되어 있는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
회의 간사를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일자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
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소속직원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함(안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
회의 사무처리와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간사는 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소속직

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사항: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
----------	-----

제출년월일:1996. 9. .
제출자: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임명적으로 되어 있는 마포구공직자윤리위
원회의 간사를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서울특
별시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
리로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
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소속직원 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함(안 제7조제2항).

3. 개정근거

공직자윤리법(1995. 12. 29. 법률제5108호)
제9조

4. 개정조례(안):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불필요

붙임: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하고, 사
무직원은 감사실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
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간사등) ①(생략)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 공무원 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간사등)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소속직원 중에서 구 청장이 임명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6. 9. 13.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1996년 9월 9일 마
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1996년 9월 10일

다. 상정일자:제4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6.9.1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시민봉사실장 최 승 범

가. 개정이유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민원
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원화(인증,
소인분리)되어 있는 창구의 증명민원 업무
처리방법을 일원화(인증, 소인 동시처리)하고
자 함.

나. 주요개정골자

- 동장의 공인 관수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3조제4항)
- 구청장의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을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5항)
-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 관 수)

○동 개정조례안은 '94. 11. 1.부터 시행
된 동사무소 조직체계가 사무장제에서 시민
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계 직제가 신설됨으
로써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
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각각
관수하도록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따른 불합
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구청장과 동장의 민원사무용 공인을 수
입증지 요금계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

정하여 인증과 소인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으로 민원인의 편의
도 증진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 5. 토론요지:없음
- 6. 심사결과: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 8. 기타사항: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104
-----------	-----

제출년월일 : 1996. 9.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민원
사무 편의를 도모기 위하여 이원화(인증,
소인 분리)되어 있는 창구의 증명민원 업
무처리방법을 일원화(인증, 소인 동시처리)하
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동장의 공인 관수자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3조제4항).
- 구청장의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을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5항).
-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6항).

3. 개정근거

○사무관리규정(1996. 6. 29. 대통령제
15063호) 제41조

- 4. 조례(안):별첨
- 5. 예산조치필요성:필요

첨부: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